

호성공신 신잡의 영정에 대하여 (扈聖功臣 申礪의 影幀에 對하여)

鄭 明 鎬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

1

빈번히 외침(外侵) 국난(國難)을 겪어 오면서 선조(先祖)들이 애써 남겨놓은 일이요, 유산(遺産)이며 우리들의 정신적(精神的) 지주(支柱)가 될 수 있는 문화유산(文化遺産)을 어느 누구의 자손(子孫)이요 후손(後孫)이든 간에 마땅히 보존(保存) 관리(管理)할 의무(義務)가 있다고 하겠다.

문화재(文化財)를 애호(愛護)하는 마음은 조상(祖上)들을 추모(追慕)하는 마음과 같이 애지중지(愛之重之) 가꾸워 주고 돌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매(愚昧)한 후손(後孫)들의 일부(一部)는 그들의 귀중(貴重)한 유산(遺産)에 대(對)하여 귀중성(貴重性)을 망각(忘却)한 나머지 이들을 누추한 곳에 방치(放置)하거나 돌보지 않은 까닭에 해충(害虫)의 양식(糧食)으로 화(化)해 버리고 있지 않은가 하면은 상인(商人)들에게 가치(價値)없이 양도(讓渡)한 연후(然後)에 그의 진가(眞價)와 귀중성(貴重性)을 뒤늦게 인식(認識)하고 불려지환(不慮之患)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겠다.

다행(多幸)히 관계당국(關係當局)에서는 이상(以上)과 같은 불려지사(不慮之事)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發生)되는 것을 미연(未然)에 방지(防止)하기 위하여 동산문화재등록(動產文化財 登錄) 계몽운동(啓蒙運動)을 실시(實施)하게 되었다.

동산문화재(動產文化財)중에는 가장 소홀하게 다루워 지기 쉬운 것들이 허다하기 때문이 귀중성(貴重性)을 상기양양(想起昂揚)하며 사장(死藏)되어 가는 문화재(文化財)를 새로 발견(發見)하자는 범국민운동(汎國民運動)으로서 계획(計劃) 실시(實施)하게 되었음은 매우 다행(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이 거국적(舉國的)인 대사업(大事業)의 일환(一環)으로서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근무(勤務)하고 있는 직원(職員)과 함께 충청북도지방(忠淸北道地方)에 산재(散在)하고 있는 동산문화재(動產文化財) 실태조사(實態調查)를 할 기회(機會)가 있었다.

이 조사기간(調查期間)중 특히 주목(注目)된 것은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노원리(忠淸北道鎭川郡梨月面老院里) 960번지(番地)에 소재(所在)하고 있는 신현종씨택(申鉉宗氏宅)의 유물(遺物) 수점(數點)을 조사(調查)하게 되었다.

이 신현종씨택(申鉉宗氏宅) 후정(後庭)에는 이미 30여년(餘年) 전(前)에 천연기념기(天然記念物) 第13號로 지정(指定)된바 있는 로도래지역(鷺渡來地域)으로써 널리 소개(紹介)되어 있는 곳이다.

이 로도래지역(鷺渡來地域)의 향재편(向在便)에 사당(祠堂)과 영정각(影幀閣)이 나란히 한가하게 유치(留置)되어 있다. 이 사당(祠堂)과 영정각(影幀閣)에는 임진왜란시(壬辰倭亂時)에 배수(背水)의 진(陳)으로 순직(殉職)하였다는저 유명(有名)한 신립장군(申砮將軍)의 사백씨(舍伯氏)가 되며 선조대왕(宣祖大王)을 신의주(新義州)까지 호종(扈從)하면서 난국(難局)을 모면하는데 전력을 나하여 호망공신이등(扈望功臣二等)에 녹봉(錄封)을 받은 31名중에 한 사람이며 인조대왕(仁祖大王)의 비(妣)인 인헌왕후(仁獻王后)의 외삼촌이 되는 평천부원군(平川府院君) 신잡(申礪)을 추모(追慕)하기 위하여 세운 곳이다.

이 영정각(影幀閣)에는 일건(一巾)의 영정(影幀)이 비치(備置)되어 있으며 사당(祠堂)에는 신잡(申礪)이 평시(平時)에 사용(使用)하였다는 강(綱)건 1개(個)와 신잡(申礪)의 생부(生父)이신 신화국(申華國)의 묘지(墓誌)와 차기함(磁器盒)이 보관(保管)되어 있다.

이들 유물(遺物)중 영정(影幀)에 대하여 간단(簡單)히 소개(紹介)하고자 한다.

2

영정(影幀)의 주인공(主人公) 신잡(申礪)은 1541年 중종(中宗)36年 신축(辛丑) 7月 22日 생원(生員) 신화국(申華國)의 장자(長子)로 탄생(誕生) 하였다.

이는 평산신씨(平山申氏)로서 시조(始祖)는 고려(高麗)의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 태사장절공(太師壯節公) 신승겸(申崇謙)의 19세손(世孫)이되며 세종시(世宗時)에 좌의정(左議政)에 있었던 신개(申槩)의 5세손(世孫)이 된다.

신잡(申礪)의 자(字)는 백준(伯峻)이요 호(號)는 독공(獨功)이다. 선조(宣祖)16年(1584) 나이 43歲의 고령(高齡)으로 정성문과(庭誠文科)의 내과(內科)에 급제(及第)한지 3年되던 선조(宣祖) 19年 6月에 정언(正言)이 되어 본격적(本格的)인 정사(政事)에 임(任)하게 되었다.

선조(宣祖) 21年 무자(戊子) 6月에 정언(正言) 신잡(申礪)이 왕에게 알리는 일중에 충주지방(忠州地方)에서 왜사(倭司) 맹평(猛平)이 피해(被害)를 당한바 앞으로 돌발(突發)할 국제관계(國際關係)를 염려하여 가해자(加害者)들의 처벌로서 충주목판관등(忠州牧判官等)의 파직(罷職)을 상고(上告)하였다. 이와 같이 잡(礪)은 정무초기(政務初期)에는 원만(圓滿)정책을 채택한듯 하다.

선조(宣祖) 22年 을축(乙丑) 8월계미(月癸未)에 정언(正言)에서 특평(特平)으로 승진하였다.

선조(宣祖) 25年 임진(壬辰) 4月 28日 정사(丁巳)에 왜구(倭寇)가 조선국(朝鮮國)의 부산(釜山)에 침입(侵入)한지 15日 되던날 왜구(倭寇)에 의하여 충주(忠州)가 함락되었다는 패보(敗報)를 접(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中央)의 선조(宣祖)께서는 중신회의(重臣會議)를 열어 간박한 전황(戰況)에 대(對)한 사후대책(事後對策)을 논의(論議) 하면서 장차 왜구(倭寇)가 수도(首都)서울을 침공(侵攻)할 경우 국왕(國王)의 처소이전(處所移轉) 즉(卽) 난(亂)을 피(避)해 피난할 곳에 대(對)하여 아울러 논의(論議)가 되었다.

이 때에 대부분(大部分)의 대신(大臣)들은 울면서 거빈(去那)을 반대하고 수도(首都)서울은 고수(固守)하자고 고집하는데 반(反)하여 신잡(申礪)은 앞으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빈(去那)할것을 간절히 요구한 결과 발의(發議)된지 익일(翌日) 4月 29日에 중신회의(重臣會議)에서 왕(王)은 수도(首都)를 떠날 것을 결정(決定)하고 출발일(出發日)은 5月初 1일기미(日己未)로 정(定)하게 되었다.

왕(王)이 이도(離都)하게 되던날에 일기(日氣)를 볼것 같으면 떠나자는 자(者)들의 우울하고 슬픔을 하늘도 아는 듯이 하루 원종일 큰비가 내렸다고 한다.

왕(王)이 서울을 떠난지 3日되던날 마침내 왜구(倭寇)들이 경성(京城)인 서울에 입성(入城)하엿으며 이에 따라 태조(太祖)께서 정도(定都)한 이래(以來) 처음으로 전관궐(全官闕)이 희진(灰盡)을 당하였으니 그 얼마나 치욕적인 현상(現象)이라 하겠는가.

이와같이 국난다사(國難多事)한 중에서도 신잡(申礪)은 선조(宣祖) 25年 임진(壬辰) 5月 무진(戊辰)에 우승지(右承旨)에서 책임이 막중한 이조참관(吏曹參觀)으로 승진(昇進)하게 되었으며 곧 동년(同年) 7月경오일(庚午日)에는 난중(難中)에 사회질서(社會秩序)를 바로잡기 힘든 시기(時期)에 사회질서확립(社會秩序確立)을 세울 중책(重責)인 형조참판직(刑曹參判職)을 맡게 되었다.

이 형조참판(刑曹參判) 신잡(申礪)은 동월(同月) 경진일(庚辰日)에 또다시 명예(名譽)로운 가선(嘉善)이라는 작위(爵位)를 받게 되었다.

이 작위(爵位)는 어려운 난국(難局)을 무릅쓰고 국왕(國王)을 모시고 서울서부터 의주(義州)까지 충성(忠誠)을 다한데서 얻어진 것이다.

이 명예(名譽)로운 가선(嘉善)도 부족(不足)하였던지 자헌(資憲)이란 칭호(稱號)를 더 가해주었다. 이와같이 가선(嘉善), 자헌(資憲)이란 칭호(稱號)를 가증(加增)한 것은 소신(所信)껏 국사(國事)를 집행(執行)한 결과(結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년(同年) 8月 기축일(己丑日)에 국왕(國王)은 비변사당상(備邊司堂上)들을 소집하여 전세(戰勢)에 관(關)하여 논의(論議)할 때 신잡(申礪)은 이빈(李□)에게 자기(自己)의 동생인 신할(申堦)과 신립(申砬)이 패전(敗戰)한 이유(理由)는 전면전(前面戰)을 한데 있으므로 이 패전(敗戰)을 면하기 위해서는 험한 곳을 선택하여 병사들을 여러곳에 매복하여 적(敵)을 기습하는 유격전술을 쓸 것이며 아울러 당시(當時) 북방(北方)인 함경도(咸鏡道)에 진입(進入)한 왜구(倭寇)와 남(南)쪽인 평양(平壤)까지 진입(進入)한 왜구(倭寇)들이 합세하여 의주(義州)를 침공(侵攻)할 것을 대비(對備)하며 또 전략적(戰略的)인 후퇴(後退)일 경우를 감안해서 배와 노(舟楫)를 정비하여 해군력(海軍力)의 중요성(重要性)을 강조(強調)하였다. 뿐만 아니라 방어선(防禦線)의 강화(強化)에도 치중하였다. 이상과 같이 신잡(申礪)은 전략적(戰略的)인 계략(計略)이 투철한 까닭인지 선조(宣祖) 26年 계사정월무진일(癸巳正月戊辰日)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임명 되었으니 이는 전시(戰時)체제에 있어서 가장 명예(名譽)로운 직책(職責)일 뿐만아니라 중요한 요직(要職)을 맡게 되었다.

또 신잡(申礪)은 연이어 계사정월(癸巳正月) 을유일(乙酉日)에 전투(戰鬪)가 치열한 평안도 지방(平安道地方)의 사령관(司令官)인 평안도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로 전임(轉任)하게 되었다.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임명(任命)받은 신잡(申礪)에게 또다시 부여된 업무(業務) 이외(以外)에도 해운수송(海運輸送)에 임무를 띄게 될뿐만 아니라 구관(勾管)이라는 병참직(兵站職)으로 전임(轉任)되기 까지 하였다.

이와같이 중임(重任)을 맡아 오던중 동왕(同王) 28年 을미(乙未) 7月 정유일(丁酉日) 신잡(申礪)에게는 뜻하지 않은 치욕적인 사건(事件)이 발생(發生)되었다.

그 사건(事件)은 다름 아니라 신잡(申礪)이 관할(管轄)하고 있는 도내(道內) 철산군(鐵山郡)에서 강도사건(強盜事件)이 발생(發生)된바 있었다

이 강도사건(強盜事件)에 관련(關聯)된 죄인(罪人)들을 옥(獄)에 구금(拘禁)하였으나 이들의 감시(瞰視)가 소홀한 틈을 타 이 죄인(罪人)들은 옥문(獄門)을 파괴(破壞)하고 탈출(脫出)

한 불상사(不祥事)를 발생(發生)케 하였다.

이에 따라 신잡(新礫)은 이 지방(地方)의 보안책임자(保安責任者)의 신분(身分)으로서 불명예(不名譽)스러운 파직(罷職)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평안도병마절도사(平安道兵節度使)의 직책(職責)에서 파직(罷職) 당(當)한지 4개월(個餘) 후(後)인 선조(宣祖) 28년(乙未) 11월 무술년(戊戌年)에 이르러 법무관(法務官)의 장(長)인 형조판서(刑曹判書)의 중책(重責)을 맡게 되었으니 이와같은 영전(營轉)은 이미 3年前에 형조참판직(刑曹參判職)의 경험(經驗)과 통솔력(統率力)이 있는데서 이 중책(重責)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형조판서직(刑曹判書職)을 맡아본지 2개월(個餘) 후인 선조(宣祖) 29년 내신정월(內申正月) 신술일(申戌日)에 특진관(特進官)에 임명(任命)되어 수시로 임금님을 모시게 되었다.

특진관(特進官)이된 신잡(申礫)은 선조(宣祖) 29년 내신(內申) 3월을해일오정(乙亥日午正) 때 별전(別殿)에서 임금님을 모시고 주역강설(周易講說)이 있었다.

이 주역강설(周易講說)을 마치고 있을때 신잡(申礫)은 왕에게 당시 정세에 대하여 알리는 말씀 중에 우리나라가 왜구(倭寇)에게 불의에 변을 당한 이후(以後) 잠시나마 소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 사람들은 지난 과거의 쓰라림을 잊고 점차로 해태(懈怠)해져 가고 있는 형편이니 하루속히 자각(自覺)하여 국방력(國防力)을 재정비(再整備)할것을 강조(強調)한 사실(事實)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즉(卽) 군사시설(軍事施設)을 특히 재정비(再整備) 강화(強化)할 것을 강조(強調)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특진관(特進官)에서 또다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승진(昇進)의 발명(發明)을 동년(同年) 6월 신유일(辛酉日)에 받았다.

특진관(特進官)에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된 신잡(申礫)은 4개월(個) 후인 10월 신자일(申子日)에 또다시 왕(王)에게 앞으로 닥칠 긴박한 사태 발생(發生)을 예방할 것에 대하여 또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다.

이미 수개월 전에 국내외(國內外) 정세(政勢)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왕(王)에게 조언(助言) 하였으나 별로 진전(進展)이 없는 까닭에 다시 다음과 같은 보고를 제출하였음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국련병(國鍊兵) 이편전최위장기(而片箭最爲長技) 경견관사(頃見官射) 즉무인(則武人) 십인 무일인사편전자(十人無一人射片箭者) 극위가려(極爲可慮) 여욕련병(如欲鍊兵) 즉편전지기(則片箭之技) 당위배양가의(當爲培養可矣).

한 바와 같이 참으로 한심스러운 현장(現狀)이라 아니 할 수 없는 바라 하겠다.

전시(戰時)나 평시(平時)에 있어서 군인(軍人)들에게 가장 기술을 요(要)하는 것이 궁술(弓術)을 수비(守備)하는 무인(武人) 10名중 활을 쏠 수 있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고 하니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군인들을 철저히 훈련시켜 배양(培養)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뿐만 아니라 국가(國家)의 기밀이 너무나 잘 속속 적(敵)에게 정확(正確)하게 전(傳)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정보망(情報網)은 사사저어(事事齟齬)하여 한심(寒心)스러운을 한탄하고 있는 기록(記錄)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조(宣祖) 29년 병신(丙申) 11월 무오일(戊午日)에 이르러서는 선조대왕(宣祖大王)께서는 여러 대신(大臣)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當時)의 정사(政事)에 대하여 토론(討論) 할때 우참찬직(右參贊職)을 맡고 있었던 신잡(申礫)은 왕(王)에 조언의 말씀을 드렸으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앞으로 닥쳐올 사태(事態)가 위박(危迫)할 때를 대비(對備)하여 군량(軍糧)을 저장할 것을 제의하였다.

즉(卽) 임진난시(壬辰亂時)에 이미 쓰라린 경험(經驗)을 받은 바와 같이 군량(軍糧)의 부족(不足)으로 인하여 곤란을 당하였던 전례(前例)가 있었음을 상기하여 인심(人心)을 안심(安心)시키며 미곡(米穀)을 충분(充分)히 저장할 것을 중의(衆議)에 결의(決議)할것을 제의하였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국방(國防)에 관한 제의를 낸지 불과(不過) 3개월(個餘)도 채 지나지 않아 선조(宣祖) 30年 정유(丁酉) 1月 11日에 이르러 마침내 일본(日本)의 가등청정(加藤清正)의 구대(軍隊)가 거제도(巨濟道)에 정박(停泊)하는 한편 기장(機張)과 서생포근방(西生浦近方)에 머물러 환시(桓時) 재침(再侵)의 기회(機會)를 엿보고 있는 때에 당면(當面)하게 되었으니 당시(當時) 우리 이조(李朝)의 국방태세(國防態勢)는 어떠하였을까?

선조(宣祖) 30年 정유(丁酉) 2月 계유일(癸酉日)의 기록(記錄)을 볼 것 같으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현상을 피력하고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國防)을 맡고있는 군인(軍人)들에게 충분(充分)히 지급(支給)되어야 할 장비(裝備)중의 하나인 궁시(弓矢)를 제조(製造)할 기구(機具)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형상이라 하겠는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늦기는 하였지만 부득히 장정(壯丁)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궁시(弓矢)를 만드는 기술(技術)을 연마시켜 궁사(弓士)의 보조병(補助兵)으로 충당(充當)할 것이며 나머지 노약자(老弱者)들을 단결시켜 도민(道民)들의 민심(民心)을 수습(收拾)케 하며 종실내(宗室內)에 우수한 전략가(戰略家)인 무재자(武才者)를 뽑아 접전지(接戰地)에 배속(配屬)시켜 적(敵)의 진로(進路)를 막으며 방비(防備)의 의무를 맞도록 제의 하였다.

이와같이 국방태세(國防態勢)를 갖출 것을 제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방태세(國防態勢)는 참으로 보잘것 없었음을 엿보인 중에 3月初부터는 왜병(倭兵)들이 남해안일대(南海岸一帶)에 상륙(上陸)하여 우리의 군관민(軍官民)들을 괴롭혀 왔을뿐 아니라 인명(人命)피해와 전선(戰船)들을 파괴하는 일을 일삼아 오곤 하였다.

이러한 다사단난(多事多難)한 시기(時期)인 선조(宣祖) 33年 경자(庚子) 2日 임오일(壬午日)에 신잡(申礮)은 검찰(檢察)에서 호조판서(戶曹判書)의 중책(重責)을 맡게 되었다.

이는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있으면서 3月에는 당시(當時) 우리 나라에 지원군으로 와 있는 명(明)나라 군인(軍人)들의 수당지급(手當支給) 관계에 대한 재정적(財政的)인 문제(問題)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는 호조판서직(戶曹判書職)을 맡은지 불과(不過) 1個月도 좀 지나지 않아 동년(同年) 4月 계사일(癸巳日)에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전임(轉任)되었으니 병조판서직(兵曹判書職)은 이번이 첫번째로서 5年前(前)에도 병조참판(兵曹參判)인 이 직책을 맡은바 있었다.

병조판서(兵曹判書)의 직(職)을 부여받은지 2個月 후(後)에 이르러서는 병조판서겸(兵曹判書兼) 세자(世子)의 빈객(賓客)으로 임명(任命)받아 세자(世子)를 받들게 되었다.

선조(宣祖) 34年 신축정월을축일(辛丑正月乙丑日)에 이르러는 마침내 수도한성부(首都漢城府)의 최고책임직(最高責任職)인 한성판윤(漢城判尹)의 명예(名譽)로운 관직(官職)을 맡게 되었으며 그 후 불과(不過) 1個餘月이 못되어 북방(北方)의 요임(要任)인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전임발령(轉任發令)을 2월병자(月丙子)에 받았다.

이에 신잡(申礮)은 임지(任地)인 함경도감영(咸鏡道監營)으로 부임(赴任)되기 앞서 별전(別傳)에서 왕(王)인 선조대왕(宣祖大王)을 뵈고 함경도지방(咸鏡道地方)의 대책(對策)을 상의(相議)한바 있었다.

이때의 기록(記錄)에 의할 것 같으면 당시(當時) 정세하(情勢下)에서 남방(南方)보다는 북동지방(北東地方)은 그다지 근심될바 아니지만 포로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토착민(土着民)들이 점차로 고향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發生)하고 있으니 그 이유(理由)로는 토박한 경작지에서 충분(充分)한 농산물(農產物)이 생산(生産)되지 않아 생활이 곤란(困難)하기 때문에 정착지(定着地)를 이탈(離脫)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 지역(地域)의 일부(一部) 토착민(土着民)들이 임진왜란당시(壬辰倭亂當時)에 왜구(倭寇)와 야합(野合)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살해(殺害)하였던 일이 있다.

이러한 불상사(不祥事)가 있은후 이 지역(地域)을 다시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으나 과거(過去)에 왜인(倭人)에게 동조(同助)하였던 지역주민(地域住民)들은 공포(恐怖)에 떨고 있으면서 기회가 있는대로 반란(反亂)을 꾀하려하고 있으니 하루 속히 이들을 평정(平定)하여야 할 것이며 이 곳을 평정(平定)하는데 공(功)이 있는 사람에게 녹봉(祿俸)을 지급(支給)하여야 할 것을 제의 하였다. 또한 관리(官吏)들이 거처(居處)할 관사(官舍)가 난(亂)중에 없어졌으므로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는 길주(吉州), 함흥(咸興)에 세워야 할 것이나 우선 함흥(咸興)에 세운 연후에 길주(吉主)에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하였다. 또한 방위(防衛)를 맡고있는 포수양성(砲手養成)과 주민(住民)들의 인심수습(人心收拾)을 위하여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하면서 임지(任地)에 부임(赴任)한지 불과(不過) 10개여(餘個)月 후인 선조(宣祖) 34년신축(辛丑) 11월병진일(丙辰日)에 병환(病患)으로 인(因)하여 함경도관찰사직(咸鏡道觀察使職)을 부득이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렇게 신체상(身體上)에 불편을 충분히 요양하여야 할 터이지만 이 사람에게 일각(一刻)의 지체도 할 여유를 주지않고 또다시 두번째로 병조판서직(兵曹判書職)을 선조(宣祖)35년임인정월정미일(任寅正月丁未日)에 재임명(再任命)하게 하였다.

이는 병조판서직(兵曹判書職)을 맡은지 5개월(個月) 후(後)인 선조35년임인(任寅) 5월을해일(乙亥日)에 전(前)에도 병조판서겸빈객(兵曹判書兼賓客)의 직(職)을 맡은 경험이 있는 관계(關係)로서인지 이에게 세자(世子)의 좌빈객(左賓客)을 겸(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잡(申礪)은 부여해준 병조판서직(兵曹判書職)과 좌빈객직(左賓客職)에 대한 사의(辭意)를 표(表)하였던바 왕(王)께서는 어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사의(辭意)를 표(表)하는 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라고 물리치고 말았다.

그후 2개월후(個月後)인 7월병무일(丙戌日)에 특진관(特進官)으로 임명(任命)되었으며 이에 따라 임금님이 별전(別傳)에서 주역(周易) 강의(講義)를 받을 때 자주 이곳에 참관(參觀)하면서 정사(政事)에 대하여 상의(相議)한 바도 있다.

이는 동년(同年) 9월 을묘일(乙卯日)에 이르러 병조판서(兵曹判書)의 직(職)을 기자헌(寄自獻)에게 인계(引繼)하였으나 동년(同年) 10월신축일(辛丑日)에 이에게 부호군(副護軍)으로 임명(任命)하였으니 직책상(職責上)으로 강등(降等)을 당(當)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처사(處事)는 신잡(申礪)이 이미 62년의 고령(高齡)이라는데서 처해진 처사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 신잡(申礪)은 또다시 부호군직(富護軍職)에 대하여 사의(辭意)를 표(表)하였으나 이도 충분히 수리되지 않았다.

이때에 사의(辭意)를 왕(王)에게 낸 이유(理由)로는 62歳の 고령(高齡)으로서 심신(心身)이 노쇠(老衰)하여 모든 행동(行動)과 직무에 충실(忠實)하고 자유(自由)롭게 이행(履行)치 못한다는 이유(理由)로서 사의를 표(表)했던 것이다.

이 사의(辭意)는 또 수리(受理)되지 않은채 부호군(副護軍)을 맡게 되었으며 그후 10개여

(餘個)月이 지난 후인 선조(宣祖) 36년계묘(癸卯) 8월경자일(庚子日)에 또다시 지중추부사직(知中樞府事職)에 임명(任命)되었으며 이를 받은지 며칠 후인 계축일(癸丑日)에 또다시 형조판서(刑曹判書)의 중직(重職)을 부여받게 되었다.

형조판서(刑曹判書)의 직(職)을 맡고 있는 중 동년(同年) 9월 병진일(丙辰日)에 회빈청(會賓廳)에서 종이품(從二品) 이상(以上)과 정이품(正二品) 이상(以上)의 당상관(堂上官)들을 모아놓고 왕(王)은 대마도(對馬島)와 시장개설(市場開設) 관계(關係)에 대한 의견(意見)을 각자(各者)에게 들었으니 그중에 신잡(申礪)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국지어왜족(我國之於倭賊) 유필보지수(有必報之讎) 유우부우태(有愚婦愚太) 역지기불가 흥련화(亦知其不可興連和) 이단이사세언지(而但以事勢言之) 주사사노(舟師師老) 수졸리심남방 실임(戌卒離心南方失稔) 거민산출(居民散出) 재아소무가시지세(在我少無可恃之勢) 도이루차출래(島夷累次出來) 전매물희의거(轉賣物貨而去) 즉수불통호(則雖不通好) 기실러애야(其實許欸也) 사사지차(事已至此) 기미지책(羈縻之策) 세부득불강(勢不得不講) 제약여평시지규(第若如平時之規) 즉비단접응지난(則非但接應之難) 필유난방지폐(必有難防之弊) 기짐작수화(其斟酌壽畫)」라 하였다.

즉 이는 왜인(倭人)들과는 오래도록 화친(和親)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이들과 접촉(接觸)을 하려면은 우리가 주도권(主導權)을 잡자는 의사를 표명(表明)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선조(宣祖) 37년 갑진정월갑술일(甲辰正月甲戌日)에 형조판서직(刑曹判書職)을 홍여순(洪汝諄)에게 물리고 다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었으며, 동년(同年) 4월 신축일(辛丑日)에 이르러서는 지의금부사직(知義禁府事職)으로 전임(轉任)되었다.

선조(宣祖) 37년 갑진육월갑진일(甲辰六月甲辰日)에 이르러 사헌부(司憲府)에서는 임진난시(壬辰亂時) 경성(京城)으로부터 의주(義州)까지 시종일관(始終一貫) 왕(王)을 수행(隨行)한 공신(功臣)들을 3분(分)하여 공신록(功臣錄)을 내리었으니 일등공신(一等功臣)으로서는 이항복(李恒福)과 정곤수(鄭峴壽)이며 이등공신(二等功臣)은 신성군후외(信城君珮外) 37名으로서 그중에 신잡(申礪)도 이곳에 포함(包含)되어 있다.

즉 이등공신(二等功臣)인 충근정량효절협책후(忠勤貞亮効節協策扈) 성공신(聖功臣)의 명예(名譽)로운 칭호(稱號)를 받게 되었다.

선조(宣祖) 37년 갑진십월이사일(甲辰十月己巳日)에 신잡(申礪)에게 제조평천군(堤調平川君)으로서 다시 일자(一資)를 가(加)하여졌으며 동월을해일(同月乙亥日)에 삼공신(三功臣)들에게 사헌부(司憲府)에서 교서(敎書)와 상(賞)을 내리었다. 또 이등호성공신(二等扈聖功臣)들에게는 도형수후(圖形垂後)에 이계작(二階爵)을 올렸으며 그의 부모처자(父母妻子)에게도 2계(階)를 올려주고 적장세습(嫡長世襲)하고 그의 녹(綠)을 오래도록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반당육인(伴尙六人) 노비구구(奴婢九口) 구사사명(丘史四名) 전팔십결(田八十結) 은자칠량(銀子七兩) 내구마일필(內廐馬一疋)을 내린곳에 대상자의 한사람이 되었다.

선조(宣祖) 39년 병오(丙午) 8월신유일(月辛酉日)에 신잡(申礪)은 개성유수(開城留守)로 임명되었다.

그후 9월병자일(月丙子日)에 어편전(御便殿)에서 선조대왕(宣祖大王)을 만나뵈었고 여러 정사(政事)에 대(對)한 담소(談笑)를 나누기도 하였다. 특(特)히 왕(王)에게 알리는 말씀중에 궁가장무(宮家掌務)등에 의해서 민간(民間)에게 폐(弊)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궁노(宮奴)와 궁노일족(宮奴一族)에 의(依)한 작폐(作弊)라고 하였다. 이 작폐(作弊)로 인(因)하여 백성(百姓)들은 차라리 외적(外賊)이 들어올것을 원할 정도로 심각함을 표현하면서 하루 속히 단속을

요구(要求)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사건(事件)은 상류계급(上流階級)의 부정부패가 막심해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후 신잡(申礪)은 개성유수(開城留守)에 임명(任命)된지 19개월후(個月後)인 선조(宣祖) 41年 즉(卽) 광해군주위년(光海君主位年) 술신사월갑신일(戊申四月甲申日)에 노병(老病)으로 인(因)하여 부득히 유수직(留守職)을 사임(辭任)하였으니 이는 관리직(管理職) 생활(生活)을 한지 25年이란 오랜 기간(期間) 즉(卽) 생(生)의 후반기(後半期)를 매꾸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성유수직(開城留守職)을 사임(辭任)한지 만(滿)1年되는 광해원년이위사월갑자일(光海元年已位四月甲子日)에 68歲로서 파란만장(波瀾萬丈)한 일기(一期)를 맞게 되었다.

이와같이 신잡(申礪)은 졸서(卒逝)하였다는 소식(消息)이 대궐(大闕)에 전(傳)해지자 조정(朝廷)에서 다음과 같은 조처(措處)가 내려지고 있었음을 이조왕조실록(李朝王朝實錄) 기록(記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광해군원년기유사월갑자일(光海君元年己酉四月甲子日)

평천부원군(平川府院君) 신잡졸(申礪卒) 전일훈호중신졸서(傳日勳扈重臣卒逝)

불승경도(不勝驚悼) 치표제사령해조(治表諸事令該曹) 조례거행(照例舉行)

상기(上記)한 기록(記錄)을 보아서 알겠지만 신잡(申礪)을 임진(壬辰), 정유양란(丁酉兩亂)에 공(功)이 많은 훈호중신(勳扈重臣)으로써 졸서(卒逝)하였음을 슬퍼한 광해(光海)께서는 정성껏 해당 부처에 명(命)하여 치표제사(治表諸事)를 조례거행(照例舉行)하게 되었다. 광해군사년임자팔월임오일(光海君四年壬子八月壬午日)에 이르러서는 광흥부봉사(廣興副奉事)에 있는 한옥(韓屋)과 학유(學諭)에 있는 김적(金適)등(等)이 고평천부원군(故平川府院君) 신잡(申礪)의 충적(忠蹟)을 기리 후세(後世)에게 전(傳)하기 위하여 청립비(請立碑)를 세울것을 상소(上疏)하였으며 광해군오년계축(光海君五年癸丑) 12월계축일(月癸丑日)에 이르러서는 고병조판서(故兵曹判書) 신잡(申礪)에게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追贈)하는 동시(同時) 그의 고향(故鄉)인 진천(鎭川)에 입사사액(立祠賜額)케 하였다.

이와같이 나라에서는 신잡(申礪)의 충성(忠誠)스러운 것에 대(對)한 보답을 내리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210年後인 순조(純祖) 21년신이삼월을이일(年辛巳三月乙巳日)에는 광해군당시(光海君當時) 그의 자(子) 경희(景禧)가 역모사건(逆謨事件)에 관련(關聯)되어 신잡(申礪)의 명예(名譽)로운 칭호(稱號)를 박탈당하였던 것을 다시 찾게 되었다. 즉 평천부원군(平川府院君)으로 사익(賜諡)되었으며 이듬해 순조(純祖) 22年 임오삼월(壬午三月)에 다시 평천부원군(平川府院君) 충헌(忠憲)으로 사익(賜諡)하였다.

이상(以上)으로써 신잡(申礪)의 행적(行蹟)에 대(對)하여 문헌상(文獻上)으려 살펴보았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진천사당(鎭川祠堂)인 영각(靈閣)에 모여있는 신잡(申礪)의 초상화(肖像畫)에 대(對)하여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3

이 곳에서 소개(紹介)하고자 하는 신잡(申礪)의 초상화(肖像畫)는 현재(現在) 2폭(幅)으로서 1폭(幅)은 현지(現地)인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노원리신현종씨댁(忠淸北道鎭川郡梨月面老院里申鉉宗氏宅)에 보관(保管)되고 있으며 다른 한쪽은 영정각(影幀閣)에 걸려있다.

이 두폭의 초상화(肖像畫) 중 진본(眞本)은 신현종씨(申鉉宗氏)가 보관(保管)하고 있는 것

이라 하며 영정각(影幀閣)에 걸려있는 것은 부분(副本)이라 한다.

이의 규격(規格)은 화면고(畫面高)가 1cm85cm가 되며 건(巾)은 88cm가 된다.

초상화(肖像畵)를 관찰(觀察)하여 볼 것 같으면 조선충훈부공신도상(朝鮮忠勳府功臣圖像)의 기법(技法)과 공통(共通)된 정형적(定型的)인 영정(影幀)이다.

화가(畵家)의 주인공(主人公) 신잡(申礪)은 의자(椅子)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거의 등신상(等身像)이라 하겠다.

상(像)의 머리 위에는 사모(紗帽)를 깊숙하게 썼으며 얼굴을 볼 것 같으면 천연두(天然痘)로 인(因)하여 약간의 흠집이 보이고 있다.

안향(顔向)은 칠분좌안(七分左顔)으로 정시(正視)하고 있으며 흑수염자(黑鬚髭)는 엄숙하고 능엄하게 보이므로서 노안(老顔)을 들어내기 보다는 늙늙한 장년(長年)으로 보인다. 분채(粉彩)는 아직 선연(鮮妍)하고 물건기한 육색(肉色)으로 드러냈으며 안곽(顔廓)은 언필(彦筆)의 맥락(脈絡)을 정세(精細)하게 남기고 있다.

몸에 걸친 청금단령(靑錦團領)은 양편(兩扁)의 하향선(下向線)을 화면최대(畫面最大)의 포용성(包容性)으로 전개(展開)되고 파죽(破竹)과 같은 양수절개(兩袖切開)로서 도상전반(圖像全般)에 일대(一大) 생기(生氣)를 부여(賦與)하고 있는 듯 하며 이것은 목부분을 가리고 있는 두하(頭下)의 백색(白色)에 깃과 상하(上下)로 호적(好適)한 대비(對比)를 이루고 있다.

흉전(胸前)에는 큼직한 오색(五色)구름에 에워싸인 적색(赤色)바탕 중앙부(中央部) 상하(上下)에는 쌍과(雙鈔)가 오르고 내리는 모습으로 장식(裝飾)한 흉배(胸背)로서 한층 돋보이게 장식적(裝飾的)인 효과를 들어내고 있다.

이 흉배하단(胸背下端)을 가리고 있는 금제(金製)의 과(鈔)과 녹색(綠色)의 장식(裝飾)바탕을 이루고 있는 혁과대(革鈔帶)는 소매 속에 감추어진 양손에 의해 받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복전(腹前)에 모운 소매단은 보일듯 말듯한 백색(白色)의 소매뿌리 공간(空間)은 깃과 더불어 전체적(全體的)인 균형(均衡)을 드러내고 있다.



<page 104 그림>

족부(足部)에는 흑화(黑靴)의 이(履)를 신고 있는데 바닥은 백색(白色)의 가죽창이 달려 있는 듯 하다.

이상(以上)과 같이 관례복(官禮服)으로서 주인공(主人公)은 정장(正裝)을 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기법(技法)을 볼 때 여타면(餘他面)의 선(線)의 묘미(妙味) 또한 이것을 따르긴 어려운 것이나 이것은 어느 정장도상(正裝圖像)에서나 형식화(形式化)한 공통적(共通的)인 특색(特色)을 여기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작(作)이라 하겠다.

청면(靑面)에 장식(裝飾)된 운문(雲紋)은 매우 심중(深重)한 흑색(黑色)으로서 그 운문(雲紋)은 의문(衣紋)의 굴절(屈折)에 따른 형태(形態)의 변화(變化)에 적응(適應)한 사실묘사(寫實描寫)로 되지 않았고 따라서 관념상(觀念上)의 철선묘(鐵線描)가 의문(衣紋)으로 사출(寫出)되어 있다.

이와같이 실제(實際)로 상호(相互) 관계(關係)를 살펴 볼것 같으면 약화(略化)된 기법(技法)으로서 이 무렵에 그려진 타초상(他肖像)에서도 더러 보이는 사법(使法)이라 하겠으며 이는 비교적(比較的) 우수(優秀)하며 기법(技法)과 양식(樣式)이 고격(古格)함을 볼 수 있다.

이 도상(圖像)에는 도상사유(圖像事由)나 □문(□文)이 없어 제도년대(製圖年代)가 명확(明

確)치 않아 유감(有感)이라 하겠다.

다행(多幸)히 신장철씨택(申章澈氏宅)에는 신잡(申礪)의 상도(像圖)와 다소(多少) 관계(關係)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필서본(筆書本)의 수연기록(壽宴記錄)이 전(傳)해지고 있다.

이 수연기(壽宴記)는 원래(原來)부터 신씨(申氏) 집안에 전(傳)해 내려온 것이 아니라 40여 년전(餘年前)에 족친중(族親中)의 한사람이 서울서 구(求)하여 왔다고 한다.

이 문헌(文獻)을 구입(求入)하게된 동기(動機)는 족친(族親)중의 한사람이 서울에서 도배장이로 다녔는데 어느날 서울 모처의 대가(大家)집에서 일할 때 내어준 재료로서 도배를 하였다. 이 재료(材料)중 자기의 조상(祖上)의 존함(尊銜)이 보이는 모필서(毛筆書)가 보이기에 해당(該當)되는 부분(部分)만 추려내어 종가(宗家)집에 가져 왔다는 것이다.

가져온 문헌(文獻)의 내용(內容) 중에는 화상(畫像)에 관한 것과 새로운 명화가(名畫家)의 명칭(名稱)이 기재(記載)되어 있으므로 전문(全文)을 소개(紹介)하고자 한다.

만력기원지삼십오년정미즉야(萬曆紀元之三十五年丁未卽我)

성상즉위지사십년야목전세정신청행(聖上卽位之四十年也目前歲廷臣請行)

상수연(上壽宴)

이상(以上) 종묘미건(宗廟未建) 국사간우견진부허(國事艱虞堅拒不許) 금정월(今正月)

동궁간청몽(東宮懇請蒙)

윤서효격천(允誠孝格天) 일국신민곽불감읍(一國臣民郭不感泣) 시년노신출수송도부로(是年老臣出守松都父老) 장세지배(張世之輩) 십여인(十餘人) 내알개년고말팔구십문지(來謁皆年高八九十問之) 왈공등자손기인(曰公等子孫幾人) 기중장유지자손(其中張有之子孫) 장지백여개가의지인야(將至百餘皆胥矣之人也) 즉초기장자성개(卽招其長子成漑) 이언왈(而言曰)

조연유차대례(朝廷有此大禮), 상유호자(上有好者), 하필유심언자의(下必有甚焉者矣) 차다노인(此多老人), 위자손자(爲子孫者) 감불행수작호(敢不行壽酌乎), 명지왈대동수친연(名之曰大同壽親宴), 춘화지일(春和之日), 거성사여하재개유유(舉盛事如何載漑唯唯), 이퇴(而退), 즉창지(卽唱之), 부중위친지원종자(府中爲親之願從者), 무려수백명(無慮數百名), 각출재력(各出財力), 유공혹후(猶恐或後), 연수풍은(宴需豐穩), 세소한견(世所罕見), 자연길일이행례(茲涓吉日而行禮), 시례야(是禮也), 설내외청(說內外廳), 내즉여부행례(內則女婦行禮), 외칙자손행례(外則子孫行禮), 예성이진작(禮成而進爵), 부로청지왈(父老請之曰), 차이백년미견성거야(此二百年未見盛舉也), 원배부관이(願陪府官而), 동악(同樂) 시(時) 여년육십유칠세(餘年六十有七歲), 역노인야(亦老人也), 하협어동참차연(何嫌於同參此宴), 상하동취기악융융(上下同醉其樂融融), 진호사야(眞好事也) 회(噫) 차부지인(此府之人), 이행상위업상인중리(以行商爲業商人重利), 기개지지성봉친지도야(豈皆知至誠奉親之道也), 조정거차육의(朝廷舉此縛儀), 일부지민(一府之民), 관성이흥월즉(觀盛而興越則), 차실고유지천리이(此實固有之天理而), 풍초지화야(風草之化也), 기이일노수(豈以一老守), 일언(一言), 이감동심자재(而感動心者哉), 차회(此會) 비심상연음잉작차계(非尋常宴飲仍作此稷), 춘추예행지길금상구지(春秋例行之吉禽相救之), 즉역가이성미속의(則亦可以成美俗矣), 금작회화각로인상(今作繪畫各老人像), 병록동악인성명(并錄同樂人姓名), 별위상하권조례법도(別爲上下券條例法度), 이증지제군(而贈之諸君), 사기자손(使其子孫), 불실(不失), 원원본토지반명면지(源源本土之班名勉之), 행유수평천부원군(行留守平川府院君), 신유수신상공(申留守申相公), 하차지월명년정월삭조(下車之越明年正月朔朝)

도중(都中) 부로애직첩어(父老愛職牒於)

조정자(朝廷者), 상솔알어정(相率謁於廷), 공사승당이(公使陞堂而), 사지좌(賜之座), 여지주(與之酒), 잉소위기자왈(仍召謂其子曰), 오견내부년로(吾見乃父年老), 희구지심(喜懼之心), 녕

유문어귀권(寧有問於貴賤), 량진미경(良辰美景), 치주작악(置酒作樂), 이악여년수가호(以樂餘年壽可乎), 왈소민지무지(曰小民至無知), 상공명지의(相公命之矣), 퇴이파고문자대열(退而播告聞者大悅), 복길일개연우성지북(卜吉日開宴于城之北), 상공지명(相公之命), 특선어로직자존기로(特先於老職者尊其老), 별기직야(別其職也)

상공여(相公與) 즉료이개래(即寮而皆來) 회자가이(會者嘉爾) 자손열친지성사야(子孫悅親之盛事也), 사지시작(事之始作), 기희양양(其喜洋洋), 기작(既作), 기악융융(其樂融融) 도로취관(道路聚觀), 막불자차탄미(莫不咨嗟歎美) 범(凡) 유부모자(有父母者), 효심유연이생(孝心油然而生), 차(此),

상공지의(相公之意), 아지의(我知矣), 송도지민(松都之民), 이상가(以商賈), 위사유이시축(爲事惟利是逐), 능전기천성지효자선의(能專其天性之孝者鮮矣) 일문(一聞), 상공지회약□연이(相公之晦□然而), 경인개가이위효자(驚人皆可以爲孝子), 상공지능유민어효자(相公之能牖民於孝者), 족이위범어세의(足以爲法於世矣), 경력(經歷), 심집(沈諶), 역봉노모(亦奉老母), 내관성회(來觀盛會), 심유소감발이(沈有所感發而), 흥월약서기사지전말여좌운(興越略序基事之顛末如左云), 우경력심집서(右經歷沈諶序)

송도영세불망대동수천연(松都永世不忘大同壽親宴) 예명좌목(例名座目)

충근정량효정협책호(忠勤貞亮効節協策扈) 성공신보국승록(聖功臣補國崇緣)

대부행개성부유수평천부원군(大夫行開城府留守平川府院君)

신(申) 잡평산인(礪平山人)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승헌대부(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崇憲大夫)

순의군겸오위도총관(順義君兼五衛都總管)

경은완산인(景溫完山人)

통훈대부행개성부경력(通訓大夫行開城府經歷)

심집청송인(沈諶請松人)

통훈대부행개성부교수(通訓大夫行開城府教授)

이대순기계인(李大順杞溪人)

성균진사(成均進士)

이 형 장(李亨長)

요산인(遼山人)

가선대부(嘉善大夫)

장 세 문(張世文)

결성인(結城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안 경 창(安慶昌)

순흥인(順興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이 어 주(李於周)

평장인(平章人)

노인유학(老人幼學)

김 들 정(金玆貞)

우봉인(牛峯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신 (申)

원주인(原州人)

통정대부(通政大夫)

김 승 걸(金崇傑)

청주인(淸州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양 은 정(楊殷貞)

청주인(淸州人)

노인유학(老人幼學)

최 수 해(崔守海)

상원인(祥原人)

통정대부(通政大夫)

김 억 령(金億嶺)

영암인(靈巖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오 언 신(吳彦信)

예안인(禮安人)

통정대부(通政大夫)

한 억 성(韓億成)

청주인(淸州人)

가선대부(嘉善大夫)

이 창 언(李昌彦)

평산인(平山人)

통정대부(通政大夫)

김 업 개(金業溉)

전주인(全州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송 응 명(宋應命)

은진인(恩津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이 삼 용(李三龍)

전주인(全州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이 은 희(李銀希)

정안인(廷安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이 (李)	안악인(安岳人)
통정대부(通政大夫)	백 귀 조(白貴祚)	해주인(海州人)
통정대부(通政大夫)	강 범 진(姜範進)	평양인(平壤人)
통정대부(通政大夫)	박 영 주(朴英周)	강화인(江華人)
통정대부(通政大夫)	고 극 령(高克嶺)	나주인(羅州人)
가선대부(嘉善大夫)	진 업 송(陳業松)	송생인(松生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윤 익 견(尹億堅)	송생인(松生人)
가선대부(嘉善大夫)	임 춘 무(林春茂)	옥야인(沃野人)
통정대부(通政大夫)	한 응 창(韓應昌)	양주인(楊州人)
통정대부(通政大夫)	홍 언 인(洪彦仁)	남양인(南陽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조 한 걸(曹漢傑)	진해인(鎭海人)
통정대부(通政大夫)	한 혼 령(韓欣嶺)	춘천인(春川人)
통정대부(通政大夫)	김 여 홍(金呂弘)	설성인(雪城人)
통정대부(通政大夫)	한 검 승(韓儉崇)	청주인(淸州人)
자헌대부(資憲大夫)	임 희 서(林熙瑞)	안동인(安東人)
통정대부(通政大夫)	김 인 성(金仁成)	광주인(光州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차 윤 식(車輪軾)	연안인(延安人)
통정대부(通政大夫)	김 익 윤(金億倫)	청풍인(淸風人)
통정대부(通政大夫)	노 언 경(魯彦卿)	장성인(長城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최 정 해(崔貞海)	상원인(祥原人)
통정대부(通政大夫)	김 응 천(金應天)	김해인(金海人)
가선대부(嘉善大夫)	박 도 일(朴道一)	무안인(無眼人)
통정대부(通政大夫)	김 응 명(金應明)	전주인(全州人)
통정대부(通政大夫)	백 현 량(白賢良)	금산인(金山人)
	이 몽 천(李夢天)	영천인(永川人)
	이 희 창(曹希昌)	가흥인(嘉興人)
	이 만 정(李萬貞)	과계인(婆溪人)
가선대부(嘉善大夫)	장 희 침(張希琛)	대원인(大元人)
통정대부(通政大夫)	현 언 성(玄彦成)	의창인(義昌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송 희 손(宋希孫)	인의인(仁義人)
가선대부(嘉善大夫)	홍 천 룡(洪天龍)	남양인(南陽人)
통정대부(通政大夫)	박 대 섭(朴大燮)	임회인(臨淮人)
통정대부(通政大夫)	김 남(金楠)	성성인(岑城人)
통정대부(通政大夫)	김 대 령(金大嶺)	전주인(全州人)
가선대부(嘉善大夫)	최 태 직(崔泰直)	죽주인(竹州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장 문 문(張文汶)	수안인(綏安人)
	이 치 웅(李致熊)	연안인(延安人)
	박 의 달(朴義達)	무안인(務安人)
자헌대부(資憲大夫)	장 유 기(張有起)	진주인(晉州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신 이 평(申二平)	평산인(平山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이 춘 무(李春茂)	평산인(平山人)

가선대부(通政大夫)
 통정대부(通政大夫)
 통정대부(通政大夫)

통정대부(通政大夫)

조 명 정(趙明正)
 최 석 중(崔錫仲)
 민 자 성(閔子成)
 이 심(李沁)
 윤 지 원(尹之元)
 김 충 운(金忠雲)
 조 태 희(趙泰希)
 김 수 해(金遂海)
 송 춘 대(宋春大)
 이 명 선(李命善)
 권 상 희(權尙希)
 신 대 응(申大雄)
 송 유 신(宋有信)
 백 덕 중(白德仲)
 이 거 음(李巨蔭)
 조 응 충(趙應忠)
 이 충 우(李忠雨)
 오 충 우(吳忠友)
 김 대 초(金大初)
 오 수 □(吳遂□)
 고 치 황(高致滉)
 김 여 신(金麗信)
 홍 충 신(洪忠信)
 심 소 한(沈少漢)
 박 인 수(朴仁壽)
 김 만 령(金萬齡)
 김 충 정(金忠貞)
 김 인 복(金仁福)
 이 덕 령(李德齡)
 양 해 용(梁海容)
 허 목 견(許墨堅)
 박 학 립(朴鶴林)
 임 춘(任春)
 이 작 달(李爵達)
 고 명 창(高命昌)
 송 지 문(宋之文)
 장 철(張喆)
 고 문 섭(高汶燮)
 이 삼 명(李三命)
 이 창 백(李昌伯)
 이 원 재(李元載)

한양인(漢陽人)
 전주인(全州人)
 여흥인(驪興人)
 전주인(全州人)
 파평인(坡平人)
 설성인(雪城人)
 양주인(楊州人)
 개성인(開城人)
 은진인(恩津人)
 전주인(全州人)
 안동인(安東人)
 평산인(平山人)
 여산인(礪山人)
 비명인(昆明人)
 안성인(安城人)
 백천인(白川人)
 개성인(開城人)
 해주인(海州人)
 청주인(淸州人)
 해주인(海州人)
 제주인(濟州人)
 김해인(金海人)
 남양인(南陽人)
 청송인(靑松人)
 남원인(南原人)
 설성인(雪城人)
 곡성인(谷城人)
 양주인(楊洲人)
 양주인(楊洲人)
 해주인(海州人)
 거창인(居昌人)
 순창인(淳昌人)
 풍천인(豐川人)
 홍주인(洪州人)
 강화인(江華人)
 인의인(仁義人)
 결성인(結城人)
 강화인(江華人)
 전주인(全州人)
 전주인(全州人)
 개성인(開城人)

	노 지 평(魯之平)	장성인(長成人)
	백 용 우(白龍雨)	청도인(淸道人)
	이 석 현(李碩賢)	평산인(平山人)
	최 천 운(崔天雲)	전주인(全州人)
	이 성 현(李星軒)	개성인(開城人)
	김 춘 빈(金春彬)	의성인(義城人)
	이 대 형(李大亨)	평산인(平山人)
	이 명 달(李明達)	전주인(全州人)
	이 도 천(李道天)	전주인(全州人)
	김 천 흥(金天興)	김해인(金海人)
	이 상 묵(李尙默)	개성인(開城人)
	정 일 수(鄭日壽)	연일인(延日人)
	박 중 천(朴宗天)	경주인(慶州人)
	조 천 원(趙天元)	한양인(漢陽人)
	이 달 원(李達元)	연안인(延安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이 석 한(李碩漢)	전주인(全州人)
	김 수 정(金秀正)	김해인(金海人)

곡산부사(谷山府事), 춘부성균진사(春府成均進士), 이문도(李汶道), 경주인(慶州人)
시일(是日), 봉친부임읍(奉親赴任邑), 과차송도(過此松都), 관기수친(觀其壽親), 대동연(大同宴), 심자감읍(心自感邑), 봉친입배어연좌납은십량동삼어영세불망열좌록(奉親入拜於宴座納銀十兩同參於永世不忘列座綠)

궐일강동현령(厥日江東縣令), 역과차(亦過此), 감기효성(感其孝誠), 입사왈(入謝曰), 소생(小生), 금년육십유팔역가위노인(今年六十有八亦可謂老人), 원일좌존호지삼미답여하(願一座尊皓之參未榻如何)

현 령(縣令)	이 원 형(李元亨)	전주인(全州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조 치 강(趙致江)	한양인(漢陽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심 일 청(沈一靑)	청송인(靑松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유 치 성(劉致成)	백천인(白川人)

신유상회논문(申留相回論文)

만력기원지삼십오년(萬曆紀元之三十五年)

성상즉위지사십년야(聖上卽位之四十年也)

동궁간청몽(東宮懇淸蒙)

윤사수개성부명신예(允使搜開城府名臣裔), 이수수친자성어성북(以遂壽親茲城於城北), 시유정미춘정월이십유삼(時維丁未春正月二十有三), 제내녀부행락(際內女婦行樂), 외부로수수(外父老受壽), 비심상연(非尋常宴), 음잉작계(飲仍作稷), 춘추열행지길홍상(春秋列行之吉凶相), 역가이성미속의(亦可以成美俗矣), 금작표화(今作表畫), 각로인상(各老人像), 우시경성통사랑김공리혁(于時京城通仕郎金公履突), 동원대신김상국혹질(東圓大臣金相國族侄), 당세독보명화상고비견장공세문(當世獨步名畫像故碑遺張公世文), 문례청래(問禮請來), 이회각로인지면간(以繪各老人之面懇), 기흠사무불문합야(基洽似無不吻合也), 여시유수도좌이위무명영세불망지죽백(餘是留守道坐以爲無名永世不忘之竹帛), 기조운손이예지(豈洮雲孫耳裔之), 첨배관면선조행락지보호차부(瞻拜慣面先組行樂之寶乎此부), 원원갑족막과어시아(源源甲族

莫過於是也), 내세좌담제공불가불상고야(來世座榻諸公不可不相顧也)

후이유하사월(後已酉夏四月) 일(日) 요산후인성균(遼山後人成均)

진사이형장출재판각이수내세(進士李亨長出財板刻以垂來世)

이문도(李汶道) 진사기자곡산부사해부임읍시(進士其子谷山府事偕赴任邑時), 과차(過此),
입삼연석고(入參宴席故), 부득상언(不得像焉), 강동현령이원형역과(江東縣令李元亨亦過)
차사삼고(此乍參故), 차부득기상(且不得其像)

이 문헌자료(文獻資料)에 의(依)할 것 같으면 집필(執筆) 연대(年代)는 만력(萬曆)35년丁未로 밝혀져 있으며 이해가 바로 선조즉위(宣祖即位) 40년되는 해가 되며 신잡(申礪)이 개성유수(開城留守)로 부임(赴任)되던 다음해에 해당(該當)되는 정월(正月)에 있었던 일인 것 같다.

10여년전(餘年前)의 국난(國難)의 상처(傷處)도 이제는 거의 아쁘러가고 안전기(安全期)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를 기하여 장세문(張世文)이란 사람 외에 10여인(餘人)이 송도유수(松都留守)로 있는 신잡(申礪)을 찾아왔다. 이 중 장세문(張世文)은 자기(自己)의 노부(老父)를 비롯하여 개성(開城)에 사는 고령자(高齡者)가 8,90명이 되니 이 노인(老人)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수연(壽宴)을 베풀 것을 제의(提議)하였다. 이에 따라 이를 거행(舉行)키로 하였으며 모든 비용(費用)은 이에 참가(參加)를 원(願)하는 자(者)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과 이와같은 행사(行事)는 2백여(百餘)년만에 성황(盛況)을 이루게 되었으며 당사자(當事者)인 신잡(申礪)의 나이 67歲라 이 수연(壽宴)에 참석(參席)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작회화각노인상(今作繪畫各老人像) 병록동락인성명(并錄同樂人姓名) 별위상하권조례법도(別爲上下券條例法度), 이증지제군(而贈之諸君) 사기자손(使其子孫) 불실(不失) 원원본토지반명(源源本土之班名)」 세

등(等)으로서 신잡(申礪)은 서(序)를 맺었다.

이 문헌자료(文獻資料) 중에서 특(特)히 주목(注目)되는 것은 수연일(壽宴日)에 참석자(參席者)의 명단(名單)과 각자(各字)의 화상(畫像)을 그렸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사(慶事)스러운 수연일(壽宴日)에 초상(肖像)을 그리게 된 길일(吉日)은 바로 만력(萬曆)35년정미춘정월(年丁未春正月) 23일로 정해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特)히 이곳에서 주목(注目)되는 것은 참석(參席)하였던 노인(老人)들의 화상(畫像)을 그린 사람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事實)로 참으로 귀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 화가(畫家)에 대(對)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紹介)하고 있다.

「금작표화(今作表畫) 각노인상(各老人像) 간시(干時) 경성통사랑김공이혁동원대신김상국족질(京城通仕郎金公履奕東園大臣金相國族侄) 당세독보명화상(當世獨步名畫像) 고비유장공세문(故碑遺張公世文) 문례청래(問禮請來) 이회각노인지면모(以繪各老人之面貌) 기흡사무불문합야운운(其洽似無不吻合也云云)」

이상(以上)의 구절(句節)에 의해서 화공(畫工)은 경역(境域) 즉(卽) 서울에서는 통임랑(通任郎) 벼슬에 있는 김이혁(金履奕)으로서 동원(東園)이란 호(號)를 가진 대신(大臣) 김대감(金大監)의 족질(族侄)이 되며 당시(當時)에 명화가(名畫家)로 명성(名聲)이 높은 화가(畫家)임을 밝히고 있다.

이곳에서 동원대신김상국(東園大臣金相國)은 누구일까? 청선고(淸選考) 第二卷에 의할 것 같으면 김귀영(金貴榮) 현향(顯鄉) 동원명종정미알(東園明宗丁未謁) 경진상주신이행사판위(庚辰尙州辛已行史判緯) 계사(癸巳) 5月30日 졸(卒)이라고 하였다.

김귀영(金貴營)은 1919년(중종(中宗) 14)~1593년(선조(宣祖) 26) 사이에 생존(生存)하였던 문신

(文臣)이다.

이는 중종(中宗) 35년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명칭(明宗) 2년에 알성문과(謁聖文科) 병과(丙科)에 급제(及第)하여 예문관(藝文官)으로 등용되어 정자(正字), 박사(博士) 등을 역임하고 선조(宣祖) 14년에는 우의정(右議政)에 올랐다. 임진왜란시(壬辰倭亂時)에는 영중추부사(領中樞府使)로서 왕자(王子) 임해군(臨海君)을 모시고 함경도(咸鏡道)로 피난 갔다가 불행(不幸)하게도 포로가 되었다가 난후(亂後) 다시 돌아와 곧 희천(熙川)으로 유배당(流配當)해 그곳에서 졸(卒)한 사람이다.

이와같이 김이혁(金履奕)은 명문가(名文家)의 족친(族親)임을 알 수 있었으나 이에 대(對)한 좀더 상세(詳細)한 관계(關係)에 대하여는 명확(明確)치 못함은 유감스럽다.

현재(現在)까지 알려진 명화가(名畫家)의 대부분은 오세창선생(吳世昌先生)의 저서(著書) 「근역서화징(檣域書畫徵)」이나 김영윤씨(金營胤氏)의 저(著) 「한국서화명사서(韓國書畫名辭書)」 유복열씨저(劉復烈氏著)인 한국회화대권(韓國繪畫大勸) 등(等)에서 수록(收錄)되어 있지 마는 이 김이혁(金履奕)은 이곳에 빠져 있는 전혀 새로운 화가(畫家)임을 생각할 때 참으로 귀중(貴重)한 자료(資料)가 될 수 있을 것을 생각된다. 즉 새로운 화백(畫伯)이 첨가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注目)해야 할 것은 신잡(申礪)의 영정(影幀)에 대한 작도년대(作圖年代)와 어느 사람의 작품(作品)이나 하는 것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수연기(壽宴記)에 의(依)할 것 같으며 상기(上記)한 바와 같이 수연(壽宴)에 참석(參席)하였던 인사(人事)들의 대부분이 초상화(肖像畫)를 그리기 위하여 당세(當世)의 명화가(名畫家)인 김이혁(金履奕)을 초청하여 각자(各自)의 초상화(肖像畫)를 그리게 하였음을 보아 가히 신잡(申礪) 자신(自身)도 이때를 기하여 초상화(肖像畫)를 그려줄 것을 부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만약에 이때에 그렸던 그림이 바로 현존하는 영정(影幀)인 초상화(肖像畫)일 경우에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한국회화사(韓國繪畫史)중에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귀(貴)한 작(作)이라 아니 할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진천(鎭川)에 유존(遺存)되어 오는 이 영정(影幀)이 작도(作圖)되던 동기(動機)는 어떻던간에 제작(製作)된 시기(時期)는 화폭(畫幅)에 나타나 있는 흉배(胸背)를 보아 임진(壬辰) 정유(丁酉) 양란(洋亂)을 겪은 이후(以後)인 정이품(正二品) 이상(以上) 직위(職位)에 오른 이후(以後)의 것으로 생각부며 이 시기(時期)는 선조(宣祖) 37년 6월에 이등공신충근정량효절협대호성공신(二等功臣忠勤貞亮効節協對扈聖功臣)으로 책봉된 이후(以後)부터 이가 사망(死亡)하던 해인 광해군(光海君) 원년(元年) 기유(己酉)4월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5年間이 신잡(申礪)에게는 가장 호절(好節)한 시기(時期)로서 바로 선조(宣祖) 40년을 전후(前後)하여 개성유수(個性留守)에 재임시(在任時)일 가능성(可能性)이 가장 지쁘다고 볼 수 있다.

화격(畫格)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능숙(能熟)한 도화서(圖書署)의 화공(畫工)이나 화가(畫家)의 작품(作品)임은 틀림은 없을 것으로 사료(史料)된다.

또한 신잡(申礪)이 가장 활발(活潑)하게 활동(活動)하던 시기(時期)는 임진이후(壬辰以後)의 일인 것으로 볼 때 이 작품(作品)은 임진(壬辰) 이전(以前)으로 도저히 올릴 수는 없을 것이며 특(特)히 선조(宣祖) 40년이전보다는 그 이후(以後)의 작(作)으로 추정(推定) 고찰(考察)하여 불만하다.

앞으로 이 작품(作品)에 대하여 좀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곳의 주인공(主人公)이 역사적(歷史的)인 인물(人物)이니 만큼 화폭(畫幅) 또한 귀(貴)히 보존(保存)하기 위하여 문화재

(文化財)로 지정(指定) 국가(國家)의 보호(保護)를 받도록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아울러 이조사에 많은 협조(協助)를 해주신 신장철씨(申章澈氏)에게 감사(感謝)를 드립니다.